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30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이훈기·김태년·김정호

김용만 · 김태선 · 한병도

이광희 · 맹성규 · 박희승

이병진 • 이정문 • 조인철

박홍배 • 이재강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고,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약 2% 남짓으로,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성·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 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및 제 11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2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"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에 따라 조성·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"을 "다음 각 호의 기금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방송통신발전기금의"를 "제4항에 따른 기금의"로, "방송통신발전기금을"을 "기금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방송통신발전기금"을 "제4항에 따른 기금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방송통신발전기금"을 "기금"으로 한다.

- 1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에 따라 조성·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 금
- 2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성·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

제11조제1항제5호 중 "방송통신발전기금"을 "방송통신발전기금·지역 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	제7조(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
수립) ① ~ ③ (생 략)	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	4
행을 위한 재원은 <u>「방송통신</u>	<u>다음 각 호</u>
발전 기본법」에 따라 조성ㆍ	의 기금
<u> 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</u> 을	
활용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1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에
	따라 조성・운용되는 방송통
	<u>신발전기금</u>
<u><신 설></u>	2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
	한 법률」에 따라 조성・운용
	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
	<u>기금</u>
⑤ <u>방송통신발전기금의</u> 지원을	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
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원	
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	
지원받은 <u>방송통신발전기금을</u>	<u>기금을</u>
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
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	6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<u>방송통신발전기금</u> 의 지	<u>제4항에 따른 기금</u>
원을 제한할 수 있다. 방송통신	<u>기</u> 금

<u>발전기금</u>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 회 고시로 정한다.

- 1. ~ 3. (생 략)
- ⑦・⑧ (생 략)
- 제11조(위원회의 직무 등) ① 위 제11조(위원회의 직무 등) ① ---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다.
 - 1. ~ 4. (생략)
 - 5.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 요한 사업의 발굴
 - 6. 7. (생략)
 - ② ~ ④ (생 략)

			_											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⑦·⑧ (현행과 같음)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방송통신발전기금 · 지역중소 지상파방송발전기금-----
- 6. · 7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